



Contents

1. 연금 지급 정지제도(전액, 일부)	4
2. 형벌 등에 의한 연금 지급 제한	7
3. 연금소득 과세 및 연말정산	9
4. 사망 등으로 인한 유족연금 지급	11
5. 분할연금제도	15
6. 외국 거주 시 연금 지급	16
7. 연금수급자의 신고 의무	17
8. 국민건강보험제도(군인연금 관련)	19
9. 기타사항	21
10. 군인연금 홈페이지 / 스마트폰 어플	24

1. 연금 지급 정지제도(전액, 일부)

- 주요 내용

>> 연금 전액 정지(군인연금법 제27조의2 ①항 ②항)

공무원(군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이 정지됩니다.

■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대신 복무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서 채용된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금 전액 정지됩니다.

■ 기준금액 및 기관확인 : 군인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연금 일부 정지(군인연금법 제27조의 ③항~⑤항)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평균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심사를 통해 초과 소득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 지급액의 1/2 범위 내)가 정지됩니다.

소득심사

① 재취업, 창업 등으로 연금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심사를 통해 연금의 일부를 정지합니다.

① 우선정지 (해당연도)

② 정산 (해당연도+1년10개월)

③ 정산차액 환급 및 추징 (해당연도+1년11개월)

■ '20년 기준으로 연금 외 소득이 월 507만원(연6,095만원) 이상부터 연금 일부 지급 정지

② 일부 지급 정지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P6, '20년도 지급정지액 예시표 참조)하며, 소득공제 후 월 소득(총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액)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정지 됩니다.

■ '20년도는 '19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인 4,012,121원을 적용합니다.

③ 연금정지액에 대한 환급 및 추징절차는 ①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소득과 본인이 재정단에 신고한 소득 중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정지액을 매월 연금에서 우선정지를 하고, 차후 최종 국세청 확정소득을 받아 정산을 실시하여 우선정지금액과 확정된 정지금액을 비교 후 환급 및 추징을 실시합니다.

■ 추징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월 연금액의 최고 50%까지 공제됩니다.

>> 연금 정지기간(군인연금법 제13조 ②항)

재임용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퇴직 또는 소득발생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연금수급자 조치사항

>> 공무원(군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교수, 조교 등)으로 재임용 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고(군인연금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미신고시 또는 수개월 지연신고시 재임용기간동안 지급받은 연금액 총액을 목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신상변동 관리 담당(02-3146-6495)

>>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연금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9조)

■ 미신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자료를 통해 매월 정지금액이 산출되며, 매월 정지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인터넷	군인연금홈페이지 접속(www.mps.mil.kr) → 신청서비스 → 연금 외 소득신고 / 지급정지액 조정신청 ※ 첨부파일로 업로드(jpg 또는 pdf 형식)			
서류 제출 (우편/팩스)	군인연금홈페이지 접속(www.mps.mil.kr) → 민원서비스 → 연금서식방 → '기타' → 연금 외 소득신고서 / 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우 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연금 외 소득심사 담당	FAX	02-797-0350
문의전화	연금 외 소득심사 담당: 02-3146-6487			

궁금한 사항(Q&A)

Q. 소득으로 연금 일부 정지액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군인연금홈페이지 → 연금정지에상액 조회」를 이용하시면 연금 일부지급정지액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Q. 모든 소득이 연금 일부 정지에 적용되나요?

A. 연금일부지급정지에 적용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Q.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정지액 조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지급정지액 조정신청 접수
- 군인연금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출력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소득증명이 가능한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첨부하여 제출

Q. 연금 일부 정지액에 대한 정산을 익년 10월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금 일부 정지액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소득은 다음 해 9월 국세청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득시점과 약 1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20년도 지급정지액 예시표

(단위 : 원 / 산정월수 : 12개월)

총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1)	심사 대상 금액		2019 평균임금 월액(B)	초과소득월액 (A-B)	지급정지 월액 2)
연소득	평균월소득		연소득	평균월소득 (A)			
60,950,000	5,079,167	12,797,500	48,152,500	4,012,708	4,012,121	587	50
65,000,000	5,416,667	13,000,000	52,000,000	4,333,333	4,012,121	321,212	32,120
70,000,000	5,833,333	13,250,000	56,750,000	4,729,167	4,012,121	717,046	93,400
75,000,000	6,250,000	13,500,000	61,500,000	5,125,000	4,012,121	1,112,879	183,860
80,000,000	6,666,667	13,750,000	66,250,000	5,520,833	4,012,121	1,508,712	303,480
85,000,000	7,083,333	14,000,000	71,000,000	5,916,667	4,012,121	1,904,546	461,810
90,000,000	7,500,000	14,250,000	75,750,000	6,312,500	4,012,121	2,300,379	650,190
95,000,000	7,916,667	14,500,000	80,500,000	6,708,333	4,012,121	2,696,212	848,100
100,000,000	8,333,333	14,750,000	85,250,000	7,104,167	4,012,121	3,092,046	1,046,020
105,000,000	8,750,000	14,850,000	90,150,000	7,512,500	4,012,121	3,500,379	1,250,190
110,000,000	9,166,667	14,950,000	95,050,000	7,920,833	4,012,121	3,908,712	1,454,350

1)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2) <초과소득구간별 지급정지액> 군인연금법 제21조의 2 제2항

평균임금월액(401만원) 초과소득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X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 X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 X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 X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 X 50%)

2. 형벌 등에 의한 연금 지급 제한

- 주요 내용

>> 복무중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군인연금법 제38조 ①, ④항)

- 내란, 반란, 이적, 외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죄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미지급
- 기타 죄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50% 제한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군인연금법 제38조 ①항)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50% 제한

>>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군인연금법 제38조 ①항)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 25% 제한
- 기타 사유 : 퇴직수당 및 연금, 일시금에 미치는 영향 없음

>> 복무중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군인연금법 제38조 ③항)

- 퇴직수당과 일시금 : 50% 제한 → 향후 무죄 판결 시 제한된 금액(50%) 지급
- 연금 : 정상 지급 →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다음 달부터 연금 50% 제한

※ 도주 등에 따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 급여액의 50%보류(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44조 ①항 단서)

>>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 소멸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8조 ②항)

-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가산하여 지급

- 연금수급자 조치사항

>>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역 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고(유선)

- 신고하지 않았다가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목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자	CASE 1	CASE 2	CASE 3
'18. 1월	수사중 또는 형사재판 계류중(징계절차 포함)	수사중 또는 형사재판 계류중	-
'18. 6월	금고이상의 형 확정 (파면, 해임 포함)에 따른 제적	전역	전역
'18. 7월	퇴직급여 지급액 - 퇴직수당 50% 감액 지급 - 퇴역연금 50% 감액 지급 ※해임은 각각 1/4 감액 지급	퇴직급여 지급액 - 퇴직수당 50% 감액 지급 - 퇴역연금 100% 지급	퇴역급여 지급액 - 퇴직수당 100% 지급 - 퇴역연금 100% 지급
'18. 11월	-	금고이상의 형 확정	수사중 또는 형사재판 계류중
'18. 12월	-	- 퇴역연금 50% 감액 지급	금고이상의 형 확정 - 기지급금 퇴직수당 50% 환수
'19. 1월	-	-	-

CASE 1 :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징계절차 포함)되어 제적된 경우

CASE 2 :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중 전역한 경우

CASE 3 : 전역 후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중인 경우

※ 복무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궁금한 사항(Q&A)

Q. 전역 후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에 제한이 있나요?

A. 형벌 등에 의한 연금지급의 제한은 임관에서 전역까지 복무기간 중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역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형벌은 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 퇴직수당, 연금, 일시금 지급 제한(50%) 선고유예, 기소유예 : 제한 없음

Q. 전역시 퇴직급여 지급제한 받은 뒤 전역 이후 재심판결로 인해 무죄가 나온 경우 미지급된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벌 등에 의해 퇴직급여 지급제한을 받은 뒤 전역 이후 지급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 차액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매년 1월 1일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연금소득 과세 및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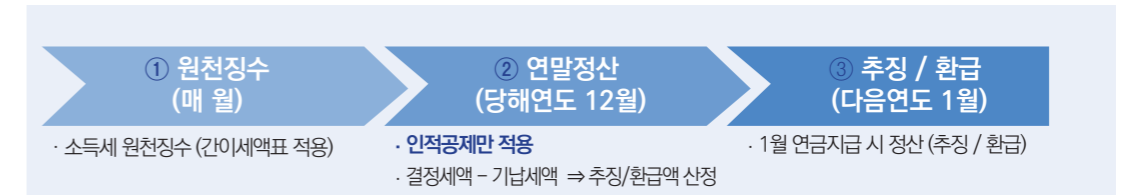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연금소득 과세범위(소득세법 제20조의3)



- 2002년 이후부터 전역 시까지 복무한 기간만큼 발생한 연금소득만 과세
- 비과세 : 상이연금, 순직/일반 유족연금

>> 과세업무 흐름(소득세법 제143조의4)



[계산공식]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189조 2항, 별표3) 적용
- 과세대상소득 : 월연금액 × ('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 기본공제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등 신고자(미신고시 본인공제만 해당)

[과세대상소득액 계산식]

- 전역일 : 2020. 03. 31. 예정
- 총기여금 불입월수(복무기간) : 385개월
- '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207개월
- 월연금액 : 4,196,070원
- 과세대상소득액=> 2,256,068 = 4,196,070 × (207/385)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127,910 / 주민세 12,790(소득세의 10%) 총 140,700원

>> 소득세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43조의4)

- 기간 / 대상 : 매년 12월 /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수급자(안내문 발송)
- 방법 :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 Fax 접수
- 제출서류 : ①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식별되어야 국세청 신고 가능
주민등록번호 730222-1777777(○), 730222-1*****(\times)
- 추정 / 환급 : 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일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제14조, 70조)

- 기간 / 대상 : 매년 5월 / 종합 합산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 외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 연금수급자 조치사항

>>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매년 12월 소득세 연말정산 기간 신고

-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mil.kr)를 이용하여 신고 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전년도와 인적공제와 변동사항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단, 현년도 전역자의 경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
※ 유의사항 두가지 이상 소득(연금 및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한쪽 소득에 대해서만 인적공제 신고

>> 종합 합산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 수급자 중 전년도와 인적공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 별도 신고 불필요
- 연중 전역자 포함 : 전역 전 근로소득과 전역 후 연금소득 합산신고

궁금한 사항(Q&A)

Q. 12월 소득세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법 제143조의4 ③항에 따라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만 적용하여 소득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종합 합산 대상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받을 수 없음

Q. 연금 외 근로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양쪽에서 받아도 되나요?

A.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라 한 사람이 당해연도에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는 반드시 한쪽 소득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만약 두 군데 이상에서 공제 받으면 이중공제로 부당공제가 되며, 차후 적발 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이 많은 직장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Q&A)

Q. 연금 외 근로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양쪽에서 받아도 되나요?

A.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라 한 사람이 당해연도에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는 반드시 한쪽 소득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만약 두 군데 이상에서 공제 받으면 이중공제로 부당공제가 되며, 차후 적발 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이 많은 직장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다시 공제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인적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망 등으로 인한 유족연금 지급

- 주요 내용

>> 유족의 범위(군인연금법 제3조)

구 분	조 건
배 우 자	· 혼인신고 된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만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제외 ▶ 단, 군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는 만 61세 이후 재혼시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인정
자 녀	· 만 19세 미만 자녀 → 단, 장애인 자녀(1~7급)는 연령제한 없음 · 만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제외 → 단, 60세 당시의 태아는 유족으로 인정
손 자 녀	·父가 없거나 그의父가 상이등급(1~7급) 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 ▶ 단, 장애인 손자녀(1~7급)는 연령제한 없음 ▶ 단, 60세 당시의 태아는 유족으로 인정
부 모	· 전역일 이후 입양된 부모는 제외
조 부 모	· 전역일 이후 입양된 조부모는 제외

» 유족 우선순위(민법 제1000조, 1003조)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우선 → 배우자는 先순위자와 동순위
- 동순위가 여러명인 경우 최근친이 先순위 →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先순위
- 최근친이 여러명인 경우 등분지급 또는 대표자 선정 시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유족이 자격상실(재혼, 사망 등) 시 동순위자 →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

» 유족연금 지급률 : 70%(군인연금법 제30조, 부칙 제11632호 제8조)

- 단, 2013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의 지급률은 60%
- 단, 19세 미만 자녀 및 연령제한 없는 장애인 자녀의 지급률은 70%

»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의 지급(군인연금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다음의 금액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

사망당시 월연금액의 3년분 × (36-연금수급월수) ÷ 36

» 유족연금 지급액의 조정(군인연금법 제19조, 제20조)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던 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1/2을 감하여 지급
- 단,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제외

예 시

■ 부부군인이 전역 후 각각 군인연금을 매월 300만원씩 받던 중 남편이 사망 시 부인이 받게 될 유족연금 지급액은?

-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 300만원 × 70% × 1/2 = 105만원
- 본인 군인연금 : 300만원
- ∴ 계 : 105만원 + 300만원 = 405만원

- 연금수급자 조치사항

» 군인연금 수급자 사망 시

구 분	조 치	제 출 서 류
유족이 있는 경우	· 유족연금 청구	① 유족연금 청구서 ② 유족대표자선정서(위임자 신분증사본 포함) ③ 유족급여등분청구서 ④ 통장사본 ▶ 유족이 1인인 경우 ②, ③번 제출 불필요
유족이 없는 경우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①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시

구 분	조 치	제 출 서 류
유족이 있는 경우 (동순위자 → 차순위자)	·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①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② 통장 사본
유족이 없는 경우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①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 사망한 날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수급권이 소멸됨(군인연금법 제52조)
 ※ 장애인 자녀의 경우 몰라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 및 친척 또는 지인에게 유족연금에 관한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Q&A)

Q.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②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어야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유족연금 청구하시면 먼저 가까운 군병원으로 신체검사를 수 있도록 안내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등급안에 해당되는 경우 등분 지급 및 위임으로 등록됩니다.

Q. 내가 재혼하면 재혼한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A. 군인연금법 제3조 ①항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나이가 61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재혼하면 그 부인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한 부인의 나이는 상관없음

Q. 유족연금 청구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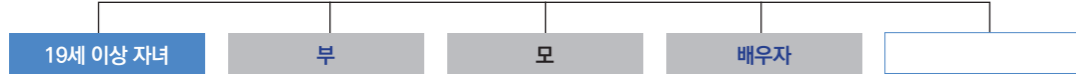
A.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유족에게 등분 지급합니다.
 - 대표자 선정 시 제출서류
 ① 유족대표자선정서(군인연금홈페이지 '연금서식')
 ② 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Q. 연금수급자가 사망 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유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면 어떻게 되느냐?

A. 큰일납니다.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 후 유족연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의 연금을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형사고발과 함께 부정수급액 전액을 한꺼번에 반납해야 하며 유족연금 청구시효(사망일 기준) 5년이 경과되면 유족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궁금한 사항(Q&A)

Q. 군인연금을 수급 받던 퇴역연금수급자가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이 19세 이상(子), 부(父), 모(母),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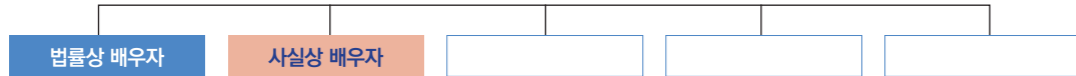
A. 부,모가 1순위 최우선순위자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됨.
 따라서 유족연금의 지분은 부(父) 1/3, 모(母) 1/3, 배우자 1/3 되며,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이 각각 신청하면 등분 지급함.
 ※ 이후 부(父) 사망 시 : 모(母) 1/2, 배우자 1/2
 ※ 이후 모(母) 사망 시 : 배우자가 단독 수급자가 됨.

Q. 군인연금을 수급 받던 퇴역연금수급자가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이 배우자, 19세 이상 장애인자녀, 부(父), 모(母)인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19세 이상 장애인자녀 1순위로 최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가 됨
 ※ 19세 이상 장애인자녀가 군인연금심의 결과 "등급외"로 결정되면 : 부(父), 모(母) 1/3, 배우자 1/3 등분 및 대표 지급

Q. 군인연금을 수급 받던 퇴역연금수급자가 사망 후 사실상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발생한 경우 유족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법률상 배우자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자가 됨.

Q. 군인연금을 수급 받던 퇴역연금수급자가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이 부(父), 모(母) 복무중 배우자로 퇴직후 이혼했다가 61세 이후 다시 재결합 한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부, 모가 1순위로 최우선순위자 되고 복무중 배우자로 이혼했다가 61세 이후 다시 재결합 한 배우자도 동순위가 됨.
 따라서 유족연금의 지분은 부(父), 모(母) 1/3, 배우자 1/3 되며,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이 각각 신청하면 등분지급함.
 ※ 2014년 10월 15일 개정(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그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유족의 범의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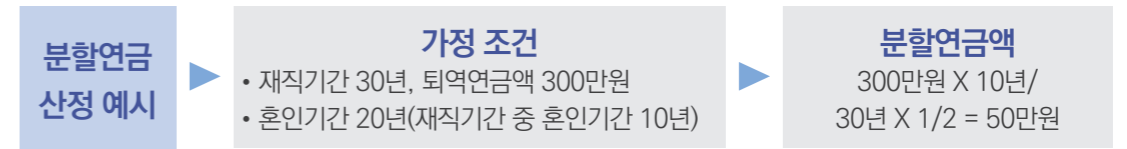
5. 분할연금제도

» (선) 청구 요건 (군인연금법 제22조)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혼 후 5년 이내 청구)
-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수급권자일 것(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 '20. 6. 11. 이후 이혼한 자로 前 배우자의 복무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신청구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제도(취소시 재청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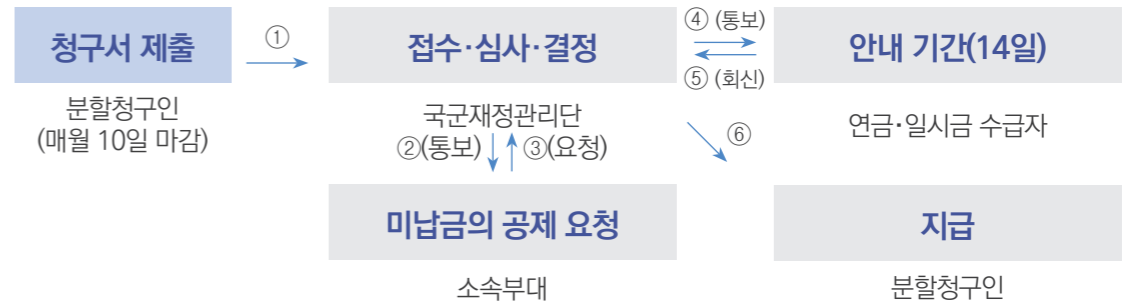
» 산정방법 (군인연금법 제22조)

- 연금·일시금 분할금액 산정
 ▶ 분할급여 산정식 = (퇴역연금·일시금액 × 혼인 기간 / 총 재직기간) ÷ 2



» (미납금) 처리절차 (군인연금법 제17조)

- 미납금(학자금, 전세자금 등)의 공제는 분할비율과 혼인 기간에 따라 양 당사자의 분할비율에 따라 공제



궁금한 사항(Q&A)

Q. 사실혼일 경우 군인연금 분할연금·일시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존부확인」판결을 받아 그 결과(판결문)를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서와 동봉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 군인연금 분할연금·일시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분할연금 수급권도 발생합니다.

Q. 분할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배우자(퇴역연금 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환원(재귀속)됩니다.

Q. 이혼한 배우자(군인)이었던 자가 퇴역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외국 거주 시 연금 지급

- 주요 내용

>> 외국으로 이주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 지급

- 연금 청산을 희망하는 경우(군인연금법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 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 청산청구서 제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여권 사본,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제출

- 연금 청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연금 계속 지급(해외송금 가능)

>> 외국거주 시 신상변동 등의 신고(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은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신고서에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첨부

- 연금수급자 조치사항

>>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기준 신상신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

▶ 미제출 시 다음연도 1월부터 연금 지급 정지(군인연금법 제54조)

>>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 및 국내대리인 선임 희망 시 국군재정관리단 통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 ▶ 미통보 시 각종 안내서,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받아볼 수 없음

>> 군인연금 해외수령을 원하는 수급자는 관련서류 작성 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

▶ 제출서류 : 해외송금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궁금한 사항(Q&A)

Q.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면 연금을 계속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나요?

A.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그러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출국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청산할 수 있습니다.

7. 연금수급자의 신고 의무

- 주요 내용

>> 연금수급자의 신고 의무사항(군인연금법 제32조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9조)

- ①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재임용 또는 재퇴직
- ②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 ③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시 ▶ 사망, 재혼, 친족관계 종료, 자녀(손자녀)가 19세 도달 시, 장애상태 해소 시
- ④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⑤ 징계의 의하여 파면된 경우
- ⑥ 고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⑦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⑧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⑨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자의 신상변동정보 협조기관

협조기관	주 기	확 인 내 용
행정안전부	수시	주민등록 상태(행정정보공동망), 유족연금수급자·장애인자녀 인적사항 등
보건복지부	수시	화장(e-하늘시스템), 장애인 자녀
현 총 원	반기	매장현황
공무원·사학연금공단	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임용
외 교 부	반기	재외국민등록사항(영주권자 등)
법 무 부	분기	출입국현황, 6개월이상 외국 장기체류자
국 세 청	분기	연금외 소득심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반기	의료 진료내역
보훈의료복지공단	반기	
경찰청, 지방법원, 각 군 법무실	월	형벌자, 수사 또는 재판 중인자
대 법 원	반기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사실혼 포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 반기 행방불명자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각 기관과 협조 / 주기적으로 연금수급자의 신상변동정보 확인

>> 군인연금 부정수급 의심자 현장조사(군인연금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64조)

- 현장조사 주기 : 수시(전담조사팀 2명)
- 부정수급 의심자 선별 기준 : 각 기관별 협조된 신상변동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 선별

사 례

부정수급 의심자 현장조사 결과

성 명	부정수급기간	부정수금액	비 고
김○○	'97.10 ~ '15.7월 (17년 9개월)	2억 8천만원 (보훈연금 2억 2천만원 별도)	교도소 수감 및 재산 압류
박○○	'16. 4 ~ '17.11월(20개월)	2천 5백만원	회수완료('18. 1월), 경찰 고발조치
권○○	'20.10 ~ '17. 12월(15년 3개월)	1억 7천만원	교도소 수감 및 재산 압류

≫ 미 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급여의 환수(군인연금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22조)

-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 과지급된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 납부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을 시 이자 및 환수비용 가산하지 않음
 -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조치

- 연금수급자 조치사항

≫ 신고 의무사항 해당 시 반드시 신고

신고 의무사항	신고 방법	신고 처
①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 제출	* 전화번호 : 1577-9090 * 팩스번호 : 02-797-0350 * 우편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퇴직연금과 (우 : 04348)
②	사망진단서 제출	
③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④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제출 또는 유선 신고	
⑤, ⑥	인사명령지 제출 또는 유선 신고	
⑦	유선 신고	
⑧, ⑨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매년 10월 31일 기준) 제출	

※ 주변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고 있거나 유족이 재혼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고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 ☎ 02-3146-6492~4)

8. 국민건강보험제도(군인연금 관련)

- 건강보험 자격 종류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6.67%×50%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등) ×195.8원 ▶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부담	건강보험료×10.25%

≫ 전역을 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 전역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속부대 인사부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격 상실 신고

- 건강보험 자격 신청방법

≫ 본인이 직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신규등록 처리

≫ 본인이 직장이 없는 경우 :

- 가족이 직장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가족이 직장이 있는 경우 :
 - 총 소득이 연간 3천4백만원 이하 : 가족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
 - 총 소득이 연간 3천4백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금융소득, 근로·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업소득 모두 합산하여 연간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 사업소득 관련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제외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시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제외	소득 합산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만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 내용

전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전역일로부터 3년간 직장가입자 혜택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기한 : 최초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전 까지

▶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음

» 혜택 : 군 복무 당시 직장가입자의 혜택을 3년간 유지 ▶ 전역 직전 12개월 평균보수월액×6.67%×50%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소득월액 보험료)

» 부과대상

직장 가입자 중 연간 보수 외 소득 합산액이 3,400만원을 초과 하는 자

▶ 보수 외 소득 : 보수를 제외한 모든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 변경사유

· 고액의 보수(월급)외 소득을 보유한 경우,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

» 부과방법

·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부과 (ex. 보수 외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4,000-3,400=600만원에만 보험료 부과)
· 600만원 / 12개월 × 6.67% = 33,350원 ▶ 고지 : 직접 개인에게 보험료 고지(직장×)

- 연금소득 평가율 적용(30%)*기존 20%에서 상향 조정

(ex. 연금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 4,000-3,400=600만원)

· 600만원 / 12개월 = 50만원
· 50만원 × 소득평가율 적용(30%) = 15만원
· 15만원 × 6.67% = 10,000원

» 문의 및 기타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9. 기타사항

- 연금 지급 및 계좌변경

» 지급일 :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기간 : 지급사유(전역)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사망)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방법 : 계좌입금(본인계좌)

·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친척 명의 계좌 불가

» 계좌변경

· 신청기한 : 매월 15일까지(그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여백에 연락처 기재) 팩스 전송
 팩스번호 : 02)797-0350, 확인전화 : 02)3146-6485

» 계좌변경 제한 :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또는 군인연금수급권자 대출금을 상환중인 경우

- 연금 관련 제증명서 발급

>> 각종 제증명서는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mil.kr) 민원증명서 발급

>> 홈페이지 이용 제한 시 우편 또는 팩스 이용 신청 및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사용용도, 화신받을 팩스번호, 연락처 기재)
 - ▶ 영문수급확인서의 경우 여권 영문이름 추가 기재
- 우편주소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감사실(우 : 04348)
- 팩스번호 : 02)748-7693 / 확인전화 : 02)3146-6016

제증명서

- | | | |
|-----------------|----------------|-------------|
| ①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④ 군인연금급여결정통지서 | ⑦ 영문수급권자확인서 |
| ②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⑤ 군인연금수급대리인확인서 | |
| ③ 군인연금지급확인서 | ⑥ 군인연금수급사실확인서 | |

- 연금액의 조정

>>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조정(군인연금법 제14조)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년도 12월 31일 통계청장이 고시
- 조정된 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조정 후 연금수급권자에게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매년 1월 중순)
- 최근 5년간 군인연금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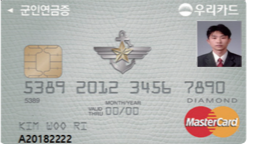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상률(%)	0.7	1.0	1.9	1.5	0.4

- 2기 군인연금증서(카드형) 발급사업 시행 안내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기 군인연금증서(카드형)발급사업 시행을 통한 금융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군인연금증카드 : 종이형 연금증서 대체, 신용·체크·일반카드 3종 중 선택 가능

>> 사업자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자	우리은행	KB국민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사업기간	'14.2.5.~'19.2.7.(5년)	'19.2.8.~'29.2.7.(10년)	
서비스	카드혜택	카드혜택+은행우대(대출·이율·예적금 등) 추가	
인상률(%)			

>> 발급방법

- 기존 카드형 군인연금증서보유자(종이형 연금증서 포함) : 카드형 군인연금증서 / 종이형 연금증서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급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소지하고 은행지점 방문
- 전역 후 연금증서 미보유자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급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지점 방문
- 신규 연금수급자(전역예정자 포함) : 최초 연금수급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급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 지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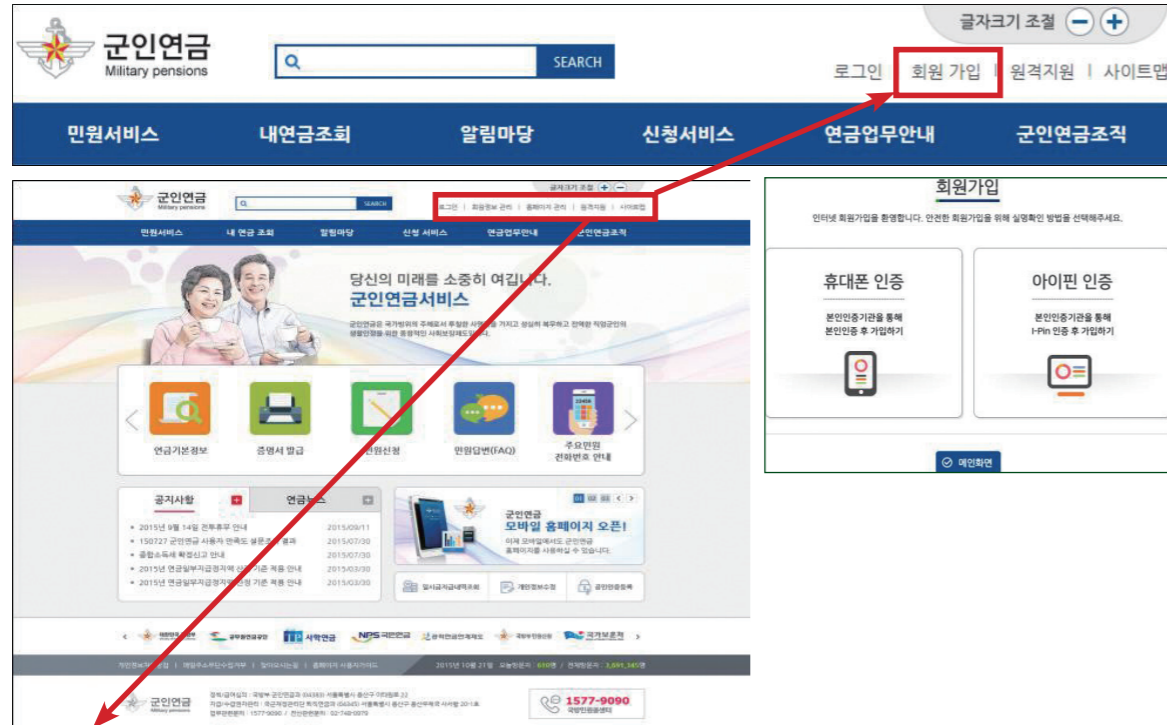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용도(군인연금증서 신청용) 및 받으실 우편주소(또는 FAX번호)를 재정단에 송부
 -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우 : 04348)
 - ※ F A X : 02) 748-7693
 - ※ 연락처 : 02) 3146-6016

10. 군인연금 홈페이지 / 스마트폰 어플

- 군인연금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인증서등록/변경

아이디:

성명:

등록가능여부: 가능 공인인증기

회원가입 후 아이디 /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인증서 로그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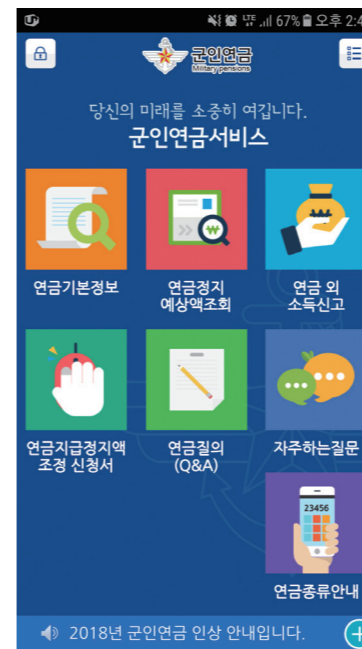
TIP

- 인터넷 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mil.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연금 지급내역, 공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다리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통해 「군인연금 어플」에 접속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연금 관련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한 서비스

민원서비스	내연금조회	알림마당	신청서비스	연금업무안내	군인연금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하는 질문 · 연금 서식 · 연금 질의(Q&A) · 홈페이지 개선의견 · 연금부정수급신고 · 증명서 발급 · 발급문서 진위확인 · 필수 프로그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기본정보 · 연금 지급내역 · 연금 인상내역 · 연금 정지내역 · 연금정지예상액조회 · 일시금(20년미만)지급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 · 연금소식 · 군인연금법령 · 연금자료실 · 제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역연금/일시금신청 · 공무원/사립학교재취업/퇴직신고 · 연금외소득신고 · 연금수급권상실 · 연금지급정지예상액신청 · 해외송금신청 · 퇴역연금/일시금신청 결과조회 · 계좌변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종류안내 · 연금의 감액요소 · 재심청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 군인연금 운영체계 · 군인연금 조직도 · 기금운용현황 · 찾아오시는 길

- 스마트폰 어플



-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 후 설치를 통해 공지사항, 연금지급(공제)내역, 소득심사 내역 등 간단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퇴직금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어플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스마트폰 Play 스토어 → 군인연금 검색 → 국방부 군인연금 어플 다운로드

